

제6차 이사회 회의자료



경기도체육회
GYEONGGI-DO SPORTS COUNCIL

목 차

I. 보고사항

1. 전차회의록 초록	5
2. 자체감사 보고	6
3. 당연직 임원 변동보고	7
4.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	7

II. 심의안건

1.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	11
2.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	12
3.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	13
4. 사무처장 임면동의(안)	14
5. 2018 도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선정(안) ...	15
6.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(안)	18

보 고 사 항

1. 전차회의록 초록
2. 자체감사보고
3. 당연직 임원 변동보고
4. 제98회 전국통계체육대회 결과보고

제5차 이사회 결과보고

☐ 개요

- 일 시 : 2016. 12. 21(수) 10:30
- 장 소 : 수원 호텔캐슬 본관 2층
- 참석자 : 재적 32명 중 21명 참석

☐ 보고사항 : 1건

- 경기도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 통합 현황보고

☐ 심의안건 : 4건

- 1안) 경기도체육회 규정개정(안)
- 2안)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(안)
- 3안) 경기도 종목단체 등급분류(안)
- 4안)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(안)

☐ 의결결과

- 1안) 경기도체육회 규정개정 사항은 사무처운영규정 및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대해 수정의결 하였으며,
- 2안) ~ 4안)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함.

2

자체감사보고

2016년도 자체감사 결과

□ 감사근거

-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28조(임원의 직무) 제4항 및 제48조(회계감사 등) 제1항

제28조(임원의 직무)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※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제48조(회계감사 등) 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
□ 주요내용

- 일 시 : 2017. 1. 16(월) ~ 1. 17(화) / 2일간
- 장 소 : 경기도체육회 7층 중회의실
- 감 사 자 : 2명
 - 행 정 : 류흥수 감사
 - 회 계 : 김희호 감사
- 감사지원 : 경영지원부장 외 5명
- 감사대상 : 경기도체육회 사무처
- 감사방법 : 실지감사
- 감사범위 : 2016년 경기도체육회 상·하반기(1월~12월)
- 감사내용 :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, 예산집행, 회계결산 등 업무전반

※ 2016년도 세무 결산감사보고서 “별첨 1” 참조

3

당연직 임원 변동보고

당연직 변동현황

성명	주요경력	임기	비고
최계동	- 경기도 - 콘텐츠진흥과장 - 관광과장 - 비전담당관 - 기획담당관 - 시흥시 부시장	2017.1.2. ~ 임기시까지	現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

4

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

《개요》

- 기간 : 2017. 2. 9(목) ~ 12(금) 4일간 / 사전경기(2017. 1. 16 ~)
- 장소 : 강원, 경기, 서울, 경북
- 경기종목 : 7개 종목(빙상, 아이스하키, 스키, 바이애슬론, 컬링 봅슬레이, 산악)
- 참가규모 : 17개 시도 3,996명(선수 2,789명, 임원 1,207명)
 ☞ 우리도 참가 : 564명(선수 440명, 임원 124명)

□ 대회결과

○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6연패 달성(2002~2017)

⇒ 1위 경기(1,251점 : 금86, 은72, 동86) / 2위 서울(1,037.5점 : 금50, 은61, 동47)

※ 대회 MVP 김민석(평촌고, 빙상(스피드) 4관왕) / 3년 연속 경기도 대회 MVP 수상

순위	시도	총득점	매달 수				비고
			계	금	은	동	
1위	경기	1,251	244	86	72	86	
2위	서울	1,037.5	158	50	61	47	
3위	강원	931	158	56	50	52	

심 의 안 건

1.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
2.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
3.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
4. 사무처장 임면동의(안)
5. 2018 도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선정(안)
6.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(안)

의결주문

- 경기도체육회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18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 제2항 1호 및 제47조(예산편성 및 결산)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을 승인 받고자 함.

※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 ②항 1호 :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※ 규정 제8장 재산 및 회계

제47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③항 :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주요내용

-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

【별첨자료 참조】

의결사항

- 경기도체육회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을 원안대로 승인함.

의결주문

- 경기도체육회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제2항 1호 및 제47조(예산편성 및 결산) 제1항에 의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을 승인 받고자 함.

※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②항 1호 :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※ 규정 제8장 재산 및 회계

제47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항 :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주요내용

-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

【별첨자료 참조】

의결사항

- 경기도체육회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을 원안대로 승인함.

3

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

의결주문

-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대한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제2항 3호와 보칙 제52조(규정의 변경) 및 제53조(규정 제·개정)에 의거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을 승인 받고자 함.

※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②항 3호 :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주요내용

-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(2017.2.2.)를 통해 심의의결 함.
- 주요개정 : 자료첨부(경기도체육회 규정 등 11개 규정)

• 경기도체육회 규정	• 시군체육회 규정	• 경기도종목단체 규정
• 임원심의위원회 규정	•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	• 사무처운영 규정
• 징계의 양정에 관한규정	• 임직원 행동강령	• 민원사무처리 규정
• 정보공개업무처리 규정	• 경기도체육대회 규정	

【별첨자료 참조】

- 향후계획 : 규정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제2항, 제12조(총회의 기능) 제1호, 보칙 제53조(규정 제·개정) 에 의거 이사회 및 총회 심의·의결 후 대한체육회 승인 예정

의결사항

-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을 원안대로 승인함.

4

사무처장 임면동의(안)

의결주문

-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면동의(안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제2항 6호, 제29조(임원의 임기) 제1항, 제49조(사무처) 제3항에 의거 사무처장 임면동의(안)을 동의 받고자 함.

※ 경기도체육회 규정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②항 6호 : 사무처장의 임면동의

제29조(임원의 임기) ①항 :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49조(사무처) ③항 :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

주요내용

- 제49조(사무처) 제3항에 의거 회장의 지명을 받음.

성명	직위	당초임용기간	재임용기간
최규진 (62.3.18)	사무처장(2호)	2015.1.12. ~ 2017.2.28. (총회시까지)	2017.2.28. ~ 2019.2.28. (총회시까지)

의결사항

-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위와 같이 동의하기로 승인함.

의결주문

- 2018년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2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선정(안)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제3장(개최지 선정) 제17조(개최지 결정)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규정 제2장(대축전 운영위원회 및 개최지 선정) 제10조(규정의 준용)에 의거 개최지를 선정하고자 함.

그간 추진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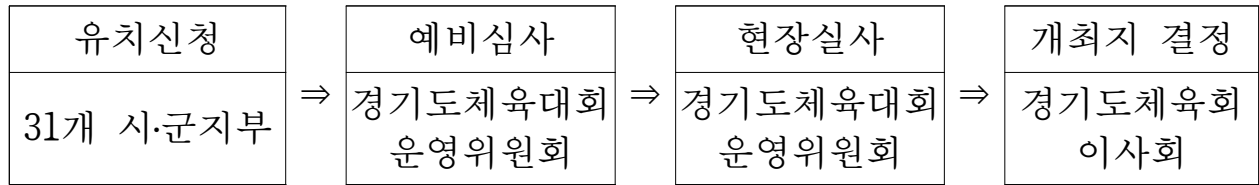
- 2016. 8.29 : 유치신청 안내(경기도 → 시·군청, 8.29~9.30)
- 2016. 9.27 : 양평군 유치신청 접수(단독)
- 2016.12.12 :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유치신청 사전검토
- 2017. 2. 2 :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양평군 현장실사

사업내용

- 대회개요

구 분	경기도체육대회	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
기간 및 참가규모	3일/31개시·군 11,000여명	4일/31개시·군 20,000여명
운 영 방 법	1·2부 구분운영, 점수제	일반부·어르신부
경 기 종 목	24개종목(정식21, 시범3)	22종목(정식20, 시범2)

● 개최지 선정 절차



● 유치신청 지역현황

《 붙임 참조 》

의결사항

- 2018년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2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선정(안)을 결정사항에 따라 승인함.

《붙임》

● 유치신청 지역(양평군) 현황

구 분	양 평 군	비 고
기 본 현 황	• 면적 : 877km² (서울의 1.45배 / 경기도 1위) • 인구 : 112,880명 (2016.12.31. 기준) • 행정 : 1읍 11면, 271리 794반 • 예산 : 452,391백만원	
주 경 기 장	• 명칭 : 양평종합운동장 • 좌석 : 12,000석 • 부지면적 : 164,077m² • 건축면적 : 58,616m² (지하1층, 지상3층) • 준공예정 : 2017년 12월 20일 • 공인 : 3종공인 예정 • 주차 : 746대	
폐 회 식 장	• 물 맑은 양평체육관	
개 최 종 목	• 도민체전 : 24종목 46경기장 • 도대축전 : 22종목 45경기장	2종목 관외
예 산 편 성	• 도민체전 : 도비82억, 시비160억 • 도대축전 : 도비11억, 시비 13억 ※종합운동장 170억	제출 자료 근거
교 통	• 서울춘천고속도로, 중부내륙고속도로, 제2영동고속도로, 6번국도, 중앙선 전철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추었으며 접근성 용이함	
숙 박	• 호텔 4개소, 일반숙박 637개소, 수련원 2개 • 총 객실 5,245개 총수용인원 20,980명	

의결주문

- 경기도체육회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제2항 8호에 의거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(안)을 승인받고자 함.

※ 경기도체육회 규정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②항 8호 :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
주요내용

- 일 시 : 2017년 3월 3일(금) 11:00
- 장 소 : 호텔캐슬 크리스탈홀(지하 1층)
- 구성인원 : 회원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 1명
- 보고사항
 - 자체감사보고
 - 당연직 임원변동 보고
 -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
- 심의안건
 -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
 -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
 - 신임 임원 선임(안)

의결사항

- 경기도체육회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(안)을 원안대로 승인함.